

의과대학 학생평가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대학 학생평가의 원리, 원칙과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교수, 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리) 학생평가는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실행한다.

1. 학생중심의 수업과 학생 성장을 돕는 평가를 시행한다.
2. 우리대학의 사명, 교육목표, 졸업성취에 따라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육과정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3. 학생의 학업성취를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4. 학생중심수업과 성과바탕교육, 형성평가, progress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보충학습과 포트폴리오 평가, 피드백을 활용하여 학생의 실제적 학습(authentic learning)을 돕도록 한다.

제3조(원칙) 학생평가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실행한다.

1. 학습성취에 따라 지식, 술기, 태도 영역을 포함하여 학생평가를 실시한다.
2. 학습성취와 교육방법에 적합하게 학생평가를 실시한다.
3. 수업 내 형성평가를 권고하며, 학생평가 후 피드백을 실시한다.
4.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학생평가를 실시한다.
5. 평가결과를 학생개인에게 공개하여 학생 학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6. 학습성취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보충학습을 실시하여 성과바탕교육을 지향한다.
7. 임상실습의 경우 직무중심평가를 지향한다.
8. 임상실습의 경우 학습성취 달성을 위해 임상실습포트폴리오 활용을 지향한다.
9. 임상실습의 경우 객관화구조화임상평가 포함을 지향한다.

제4조(방법) 학생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행한다.

1. 학생평가는 교육영역에 따라 지식, 술기, 태도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2. 영역별 평가 방법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영역	지식	술기	태도
평가 방법	필기시험, 구두시험, 토론 및 발표, 보고서 및 과제 등	실기시험, 관찰법, 구술시험, 보고서 및 과제 등	학생자기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토론 및 발표, 보고서 및 과제 등

3. 학생평가는 평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총합)평가 간 균형을 맞추어 평가하며 다음 표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구분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총합)평가
시기	수업시작 전	수업 중	수업 끝
목적	학생의 선수학습정도, 학습결손의 유무, 심리적 특성을 진단	1. 학습성과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평가활동 2.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고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	수업성과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
검토사항	1. 학생이 문제에 관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2. 어떤 점이 학습에 곤란 혹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가? 3. 학생은 전에 학습한 자료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려 하는가? 4. 학생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1. 학생이 제시된 자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2. 학생은 학습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 3. 학생은 개념과 원리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4. 수업속도는 적절한가? 5. 자료는 옳게 제시되고 있는가?	1. 학생은 자료를 얼마나 잘 이해하였는가? 2. 학생은 학습한 것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 3. 학생이 도달한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4. 학생은 다음 수준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는가?
방법	관찰, 구두질문, 시간 제한의 필기시험, 검사문항, 학생의 자기평가 등	3분 테스트, 퀴즈, 구두질문, 쪽지검사, 상황기록, 필기시험, 발표, 과제, 포트폴리오 등	과제, 포트폴리오, 논문, 논술식 수업, 구두발표, 필기시험 등
기능	1. 출발점 행동 진단 2. 학습장애 진단	1. 학습행동 강화 2. 학습곤란의 진단과 교정 3. 학습진전의 효율화 4. 학습지도방법의 개선	1. 학업성적판정 2. 장래성적의 예측 3. 집단간의 성적 비교 4. 자격인정 5. 수업의 질적관리

1. 총괄평가 후 1주 안에 학생에게 피드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담당교수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으면 책임교수(부책임교수)에게 보고하고, 책임교수(부책임교수)는 학생을 면담하고 필요시 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학생지원센터장에게 보고한다.
3.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보장을 위하여 외부평가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관리) 학생평가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책임교수는 문항출제양식에 맞추어 총괄평가 문항과 재시험 기준, 재시험 문항을 강의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
2. 시험 문제 공개는 행정팀에서 시험 후 1주 이내 실시한다.
3. 평가 결과는 행정팀에서 시험 후 2주 이내에 학생에게 공개한다.
4.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성적 이의를 제기하는 공용메일 (socre@dsmc.or.kr)로 공지 받은 1주 이내 교과목 성적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5. 행정팀은 학생의 교과목 성적 이의 신청서를 책임교수에게 전달하고, 책임교수는 1주 이내 결과를 행정팀에 통보한다.
6. 행정팀은 학생에게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시 학생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팀에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7. 책임교수는 시험 4주 후 관련 자료를 행정팀에 제출한다.
8. 학기말에 시행되는 교과목은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6조(시험) 학생시험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학생시험 지침을 따른다.

제7조(소명제도) 소명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책임교수는 총괄평가 후 3일 이내에 교과목의 성적을 학생에게 공지한다.
2. 학생이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3일 이내 공용메일(score@dsmc.or.kr)로 소명신청서를 제출한다.
3. 소명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내 소명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소명위원회 위원은 이해 상충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4. 학기말에 시행되는 교과목은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 칙

1.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